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3. 21 선고 2023가단473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7.

판 결 선 고 2024. 3. 21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. 7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선아

별지